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
	배포일시	2017. 8. 3.(목) / 총 3매(본문2매, 참고1매)
담당 부서	도시경제과	<b>담당자</b> • 과장 김기대, 사무관 정형교, 주무관 문병운 • ☎ (044) 201-3735, 4843
<b>보 도 일 시</b>		2017년 8월 4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3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## 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‘추첨 방식’ 으로 전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… 임대료 완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대

- 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토록 하고, 공공출자 부동산 투자회사(공공임대리츠)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.
  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이 같은 내용의 「도시개발법」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4일부터 40일간(8. 4.~9. 12.)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,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있다.
  - 먼저,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추첨 방식에 의해 공급토록 했다. 또한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방공사의 단독 또는 공동 출자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.
    - \* 공공시행자는 공동주택용지의 25% 이상을 85㎡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 의무

- 임대주택 건설 용지의 추첨방식 공급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 입찰 방식의 낙찰가 공급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요인이 제도적으로 방지된다. 따라서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한편,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,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방식 외에 주택도시 기금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또한,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하여 중복적 성격의 평가·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였다.
- 이에 따라, 관계기관 협의, 도시계획위원회 심의, 토지 소유자 동의 절차 등 개발계획 변경 절차의 재이행에 따른 시행자의 시간적·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\* 환경·교통·재해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토지소유자 동의를 면제하고 있음
- 기타 재산세 도시지역분(명칭 변경 전 도시계획세)의 특별회계 재원 배분 기준을 정비를 통해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금액에서 제외토록 하여 특별회계 간 재원 배분에 관한 불필요한 혼선과 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.
-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우편,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- \* 의견제출처 :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 
(전화: 044-201-3735, 팩스: 044-201-5569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정형교 사무관(☎ 044-201-373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참고**

**전국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('16. 12. 31. 기준)**

구 분	계	공공시행자				민간시행자			
		소계	수용 사용	환지	혼용	소계	수용 사용	환지	혼용
계	418	189	117	56	16	229	84	144	1
서울	10	9	8	1	-	1	-	1	-
부산	10	10	10	-	-	-	-	-	-
인천	29	7	5	2	-	22	12	10	-
대구	13	1	1	-	-	12	1	11	-
대전	14	5	2	2	1	9	5	4	-
광주	11	9	8	1	-	2	2	-	-
울산	9	2	2	-	-	7	-	7	-
세종	1	1	1	-	-	-	-	-	-
강원	17	8	7	1	-	9	8	1	-
경기	119	50	27	17	6	69	22	47	-
충북	12	3	3	-	-	9	3	6	-
충남	52	23	11	11	1	29	9	20	-
전북	9	8	3	2	3	1	-	1	-
전남	18	11	5	2	4	7	6	1	-
경북	40	16	9	7	-	24	6	18	-
경남	47	17	13	4	-	30	10	19	1
제주	7	7	2	4	1	-	-	-	-